



삼척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169호 2021. 4. 30.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 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6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 삼척시 고시 제6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 7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5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0
- 삼척시 공고 제533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 13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9,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1-67호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근덕면 교가리 414-28번지 및 덕산리 118-2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2개소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및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삼척시장

가. 계획취지

- 「국토계획법」 제24조제4호 다목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 조서

1) 교통시설

가) 도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84	증로3-3 덕산리 118-25	증로3-2 덕산리 446-11	일반 도로		1988.11.12. (강원도고시 제131호)	최근고시: 2010. 7. 9. (강원-213)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584	증로3-3 근덕면 덕산리 118-25	증로3-2 근덕면 덕산리 446-11	일반 도로			덕산2길
기정	소로	3	26	6	국지 도로	360	소로2-19 교가리 395-4	교가리 1109	일반 도로		1988.11.12. (강원도고시 제131호)	최근고시: 2020. 6.19. (삼척-97호)
변경	소로	3	26	6~7.5	국지 도로	360	소로2-19 근덕면 교가리 395-4	학교3 근덕면 교가리 406-1	일반 도로	삼척 국유림 관리소		맹방해변로 1길

■ 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로3-4호선 접속부(덕산리 151-2번지 일원) 도로모퉁이(가각)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 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
소로3-26호선	소로3-26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척국유림관리소 접속구간 선형 변경: 폭원 6m → 6~7.5m • 소로2-19호선 접속부 도로모퉁이(가각) 변경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계복원측량 결과 반영 - 신규 편입 필지 반영

다. 도시관리계획(시설) 변경도 및 지형도면: 별도 첨부

라. 본 고시와 관계된 서류는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6)에 비치하며, 일반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 고시 제2021 - 6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4. 27.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75-65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1. 04. 2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 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 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0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75-65	2021042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계	1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리 203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고무릉길 75-65	20210427	가설건축물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고시 제2021-69호

정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26일

삼척시장

1. 실시계획 개요

- 가. 사업명: 정하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 나. 사업위치: 강원도 삼척시 정하동 120번지 일원
- 다. 사업규모: 노후옹벽보강 A=42㎡, 보강옹벽 A=71㎡ 등
- 라. 사업비: 97백만원
- 마. 사업기간: 2021. 4월 ~ 2021.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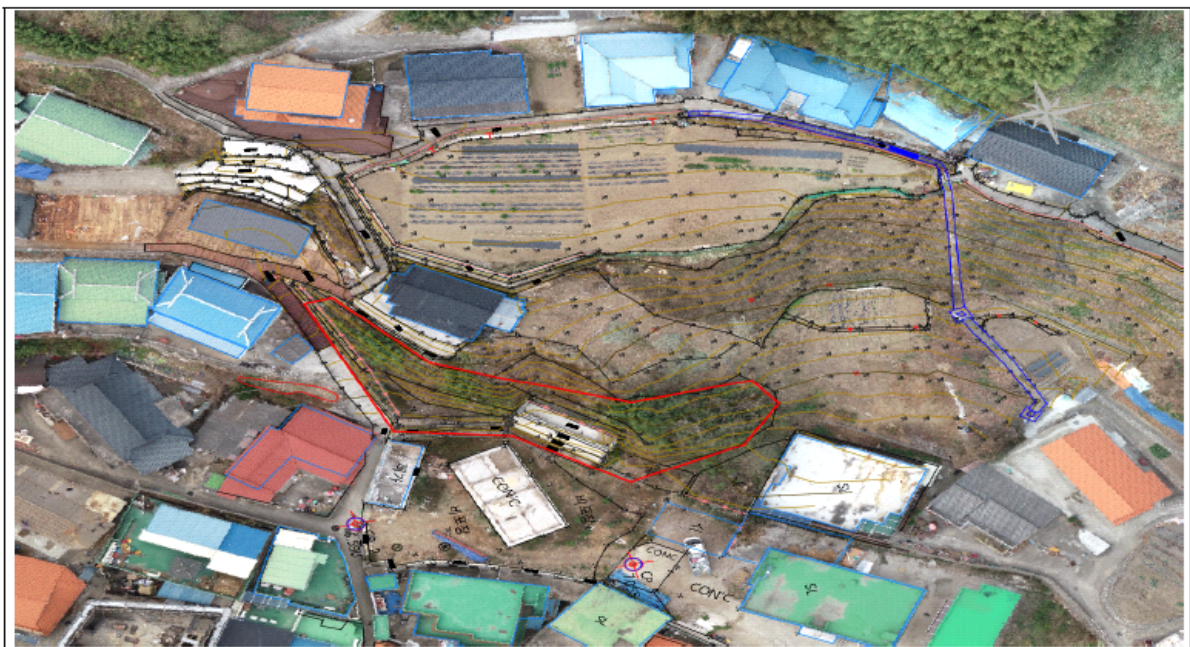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 삼척시장
- 나. 주소: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3. 위치도(항공도면)



□ 평면도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해소로 주민 생명 및 재산 보호

5.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합 계	2021년	비 고
사업내용	- 정비사업	- 정비사업	
사업비(천원)	97	97	

6.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전문가와 합동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후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의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향후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

7. 수용 또는 토지보상 : 해당없음**8. 실시설계 도서 :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열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033)570-388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삼척시 공고 제2021-51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21. 4. 26. ~ 2021. 5. 10.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21. 5. 11.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억○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노곡리 578	
	목조/시멘트기와 (1층:43.96㎡ 단독주택)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04. 26.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2021-533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통행의 금지·제한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

합니다.

2021년 04월 28일

삼척시장

직인

도로의 종류	군도9호선	노선명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모든차량 전면통제	구간	도로전면통제
기간	2021년 4월 28일부터 2021년 04월 30일까지		

이유

- 도로시설물 등의 구조 보전 및 차량운행의 위험방지

그 밖의 사항

첨부서류: 불임참조